

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5일
사업자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 (전화번호)		
시설내역	소재지		
	면적 (㎡)		
	인원 정비기술자: 명, 작업원: 명		

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팽창식 구명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정비시설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 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시설명세서 2.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.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□ 팽창식 구명설비의 종류

- 팽창식 구명뗏목
- 팽창식 구명부기
- 팽창식 구명조끼
- 팽창형(복합형) 구조정
- 강하식 탑승장치

□ 정비시설 등의 기준

- 시설: 작업장, 수세장, 누설시험장, 정비한 구명뗏목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(이중으로 겹쳐서 저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), 부품진열장, 사무실 및 위험물 저장소를 갖추어야 합니다.
- 인원: 팽창식 구명설비의 제작회사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정비기술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2명 이상 확보하고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.

□ 그 밖의 유의사항

-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확인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